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 5 판

2020. 2. 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방역대책본부

I. 대응 원칙

- (법적 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중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대응 방향)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지침 변경 예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 (병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감염원)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 ○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 가족간, 의료기관 내 2차감염 확인 ○ (전염력) $R_0^* = 1.4 \sim 2.5$ (SARS의 경우 3, MERS의 경우 지역사회 0.6, 원내 전파 4) ○ (잠복기) 불확실 *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 추정 ○ (임상증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 (위중도) 폐렴 보고사례 중 25%정도가 중증/위중 환자 * 고위험군은 고연령, 기저질환자 ○ (치명률) 약 2.1%** * 전체 2.1%, 후베이성 내 3.1%, 우한시 내 4.9%, 후베이성 외 0.16% †
* Statement on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2019-nCoV)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ttps://www.who.int/news-room/detail/23-01-2020-statement-on-the-meeting-of-the-international-health-regulations-(2005)-emergency-committee-regarding-the-outbreak-of-novel-coronavirus-(2019-ncov)?from=singlemessage&isappinstalled=0 (2020),
†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 발표자료(2020.2.4.)

II. 사례 정의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발열 : 37.5 ℃ 이상

< 신고 대상 >

1.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최근 14일 이내에

-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Ⅲ. 신고 후 대응절차

1. 의사환자 신고·보고

① 의사환자 인지 상황

- (상황1) 검역단계에서 확인(검역 대응절차는 별도 절차에 따름)
- (상황2)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감시 중 확인
- (상황3)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등)

② 개별 및 의료기관 신고·접수

- (1339) 역학적 연관성, 증상 확인 후 의사환자 정의에 해당할 경우 사례접수 및 보건소 전달
 - 의사환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별진료소로 안내
- (보건소) 사례 부합여부 확인(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 및 신고접수*
 - * 모든 의사환자 인지사례는 법정감염병 신고 필요(1339 접수사례는 보건소가 신고, 의료기관이 유선 신고만 한 경우는 팩스 또는 웹신고토록 안내)

2. 의사환자 대응 절차

① 역학조사서 작성 및 의사환자 분류

- (최초 인지 보건소)
 - 신고사례 인지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
 - 역학조사 후 역학조사서 작성(발열 확인 시 고막체온 측정)
 - * 필요시 선별진료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가능한 경우 흉부 X-ray,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실시)

< 지자체별 선별진료의료기관(보건소 포함) 활용 >

- ▶ (목적) 사례 신고 시 사례분류 등에 필요한 진료 의뢰
- ▶ (역할) 진료(체온측정, 임상증상 확인,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검체 채취, 필요 시 처방 등
- ▶ (요건) 진료 가능한 독립된 공간, 개인보호구

- (시·도 역학조사관) 사례 분류 및 조치사항 확정
 - * 필요시 중앙역학조사관과 상의하여 사례분류 및 관리조치 결정 가능
 - * 의사환자 ③(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에 해당하는 경우 역학조사관 판단없이 의사환자로 분류
- (최초 인지 보건소) 확정 이후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보고 및 Fax (043-719-9459) 또는 E-mail (kcdceoc@korea.kr) 송부
 - 2.10일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역학조사서 입력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역학조사-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기초역학조사서

② 의사환자가 아닐 경우 조치

- 최초 인지 보건소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등 보건교육 실시
 -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중국 방문력 알리기
 -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③ 의사환자인 경우 조치

가. 격리·검사 안내

- (최초 인지 보건소) 자가격리·검사 안내, 격리통지서 및 생활수칙 안내문 교부
 - 의사환자는 자가격리 원칙*(단, 폐렴 등 중증인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가능)
 - * 경증이지만 자택 내 자가격리 불가(독립된 공간 확보 또는 추가적인 보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시설 및 병원 격리) 제공 필요
 - 검체를 채취한 후 자가격리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절차 안내
 - 격리통지서 및 생활수칙 안내문 배부
 - * 자가격리 시, 자가격리통지서(서식 5), 생활수칙 안내문(부록 1, 2) 제공

나. 폐렴 등 중증인 경우 음압병상 배정 및 이송

- (담당자) 최초 인지 보건소
 - 입원검사 안내* 및 입원치료 통지(입원치료 통지서(서식1))
 - * 입원치료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 (음압병상 배정) 관할 시·도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배정 요청
- (이송조치)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음압병상 이송
 - * 운전석과 의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
 - 이송 시 의사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 * 이송요원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 구급차 운전자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

다. 음압병상 입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구급차로 이송된 의사환자를 구급차로부터 인계받아 병실로 입원조치

라. 의사환자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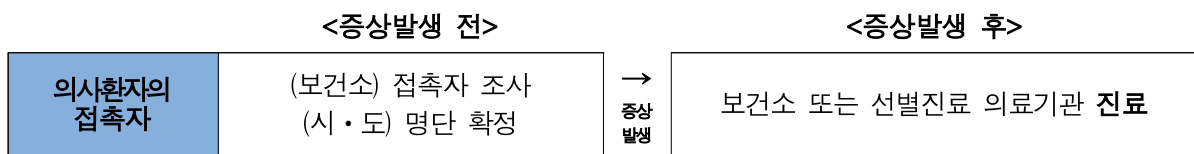
- (의료기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의사환자 발생 신고
 - * 서식 2. 감염병발생신고서의 비고란에 ‘의사환자 ①,②,③’ 구분 기재
- (의료기관 관할보건소) 신고 접수

마. 기타

- (이송수단 등 환경소독) 의사환자를 이송한 구급차는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 메르스 대응에 준해 소독 및 폐기물 처리 실시
- 의사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 눈에 띄는 오염물(구토물 등)은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 가정에서 의사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 (폐기물 처리) 탈의한 개인보호복은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

5 의사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관리

<의사환자의 접촉자 관리>



가. 의사환자의 접촉자 조사

- (담당자)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 (접촉자 조사) 보건소에서 접촉자 조사 후 시·도에서 확정
 - 증상 발생 후 접촉자(가족, 동거인, 의료진 등)를 조사하여 ‘서식4. 접촉자 조사 양식’에 기록, 시·도 검토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접촉자 관리 대기

나. 의사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담당자)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 접촉자 중 유증상자 인지 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보고
 - 보건소가 환자 소재지를 방문하여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함
 - 보건소에서 진료
- * 선별진료의료기관 방문 시 접촉력을 알리고 진료

3. 의사환자 검사

㉠ 의사환자 검사

가. 검사의뢰

- (검체채취 장소) 의료기관(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선별진료소 등) 내 독립된 공간*에서 상·하기도 검체 채취
 - * 외부인 활동공간과 구분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곳
 - ** 단,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 (검체채취)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가운, 고글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채취
- (검체종류 및 포장) 하기도(가래) 1개 및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1개, 3중 포장용기 사용
 - *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방법 안내' 참조
 - (하기도 검체) 가래 채취 시 충분한 양 채취 필요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6)와 함께 수송
 - * 단,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혈액 SST 5~10ml, 영아의 경우 1ml) 채취 (가능할 경우 대변, 소변 채취)
- (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자세한 사항은 부록 4 참조)
 - (의료기관) 의사환자 대상 급여로 검사 시행
 - * 의사환자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로, 본인이 희망한 경우 비급여로 검사시행
 - ** 검사가능 의료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2.7.~)
 - ※ 미결정의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검사분석팀)에서 잔여검체 재검사 후 최종 결과판정(필요시 재채취)
 - (보건환경연구원) 접촉자 등 역학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역학조사관이 판단한 경우나 민간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외 감염병 관리를 위해 중앙대책방역본부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경우*
 - * 환자 실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나. 검사 결과 보고

- (의료기관)
 - 양성 확인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유선 신고
 - * 최초 환자를 신고 한 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 * 의료기관 검사결과 양성 시,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 즉시 신고
 - 검사결과는 의료기관의 담당 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 (보건환경연구원)

- 양성 확인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유선 보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결과 입력

* 시스템 내 결과 입력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 즉시 확인 가능

4.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절차

※ 확진환자 발생으로 인한 대응절차는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을 참고 가능

① 환자 이송 및 심층역학조사

가. 확진환자 이송

○ (담당자) 최초 인지 보건소

- 입원검사 안내* 및 입원치료 통지(입원치료 통지서(서식1))

* 입원치료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 (음압병상 배정) 관할 시·도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배정 요청

○ (이송조치)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음압병상 이송

* 운전석과 의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

- 이송 시 의사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이송요원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 구급차 운전자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

나. 음압병상 입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구급차로 이송된 확진 환자를 구급차로부터 인계받아 병실로 입원조치

다. 기타

○ (이송수단 등 환경소독) 확진환자를 이송한 구급차는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메르스 대응에 준해 소독 및 폐기물 처리 실시

- 확진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 눈에 띄는 오염물(구토물 등)은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 가정에서 확진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 (폐기물 처리) 탈의한 개인보호복은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

나. 확진환자 심층역학조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시행
-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 재확인
 -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
 -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

② 확진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관리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리>



가.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역학조사반이 시·군·구 역학조사반과 함께 조사 시행
- (접촉자 조사)
 - 접촉자의 범위를 즉각대응팀 등이 결정
 -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조사 종료 후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정도를 평가(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 접촉자 범위에 해당할 경우 접촉자 관리 실시,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연락담당자에 보고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동거인

- (명단 등록) 최초인지보건소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접촉자 명단 입력 및 실거주지 보건소로 관리 이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명단 등록시 주의사항

- 각 사례에 대해 접촉한 확진자 번호, 접촉상황 설명 추가
- 타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이관날짜를 이관일 다음날로 설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가격리통지서 발부

○ (접촉자 명단 통보)

- 최초인지보건소에서 접촉자가 있는 거주지 관할보건소로 모니터링 대상자 이관 후 유선 통보

나.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 (담당자)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 의료기관내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종사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감시·관리 가능

○ (관리방법)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 (자가격리)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가격리(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보조 등이 필요한 경우 접촉자 격리시설 또는 병원격리)를 원칙,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 발부

- * 자가격리통지서(서식 5-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발부), 생활수칙 안내문(부록 1, 2) 제공

- *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 지원은 별도로 규정

- (능동감시)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다. 확진환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2. 의사환자 대응 절차'에 따름

5. 격리해제 조치

가. 격리해제

○ (격리해제 기준)

- (의사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음성일 경우
- (확진환자)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 검체 종류는 임상상태에 따라 결정

○ (격리해제 확인)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보건소는 격리해제 일정 확인

- (의사환자) 시·도에서 격리해제를 최종 결정하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전달

- *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일 경우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지속

- (확진환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격리해제를 최종 결정하고 시·도에 통보

- * 환자 격리해제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
- (보건소) 의료기관에 격리해제 결정사항 전달
- * (의료기관 및 최초인지보건소) 의사환자 격리해제 시, 남은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귀가조치(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 문의 안내)

나.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지속 후 해제
 -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
 -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지속
- (접촉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촉자에게 모니터링 해제 통보
- (접촉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서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입원치료 통지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치료	입원일			
	입원기간			
	입원치료 장소	[]병원 []주택 []시설		
	주소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됨을 통지합니다.

※ 입원치료에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 [] 보건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남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거주지 불명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제1급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제2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선천성 풍진 []후천성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제3급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종(CRE) 감염증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크로이츠펔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			
	[]황열	[] Deng기열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양성 []음성 []검사 진행중 []검사 미 실시	입원여부	[]외래 []입원 []그 밖의 경우		
환자 등 분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그 밖의 경우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생존 []사망				

[신고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성명

[보건소 보고정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속기관명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추정 감염지역	[]국내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방법

1.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린 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감염병환자 중 확진검사결과 또는 환자 등 분류정보가 변경되거나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야 합니다.
2. 감염병에 따라 환자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와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을 신고한 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만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4.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5.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감염병웹신고]을 통해 신고합니다.
7. 관할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신고 받은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이전 보고합니다.

작성방법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보건소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 (1) 성명: 만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과 보호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 표를 하며,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감염병 발생정보]

- (1)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발병일이 없으므로 “0000-00-00”을 적습니다).
- (2) 진단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처음 진단한 날짜를 적습니다.
- (3) 신고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관할 보건소로 처음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팩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팩스 송신일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입력일을 적습니다).
- (4) 확진검사결과: 질병관리본부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5) 환자 등 분류: 검사결과 해당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란에 √표를 합니다.
- (6) 사망여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란에 √표를 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의료기관 등]

- (1)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의료기관장의 성명을 적고,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전화번호와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소속기관장의 성명을 적습니다.
- (2)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요양기관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기관장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건소 보고정보]

- (1) 환자의 소속기관명 및 주소: 환자가 소속된 직장(사업장), 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포함합니다) 및 군부대 등의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2)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만 본인의 국적을 적습니다.
- (3) 추정 감염지역: 국외 체류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외”란에 √표를 하고, 국가명(체류국가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명을 적습니다), 체류기간 및 입국일자를 적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역학조사서(5판)

조사자	소속 성명	연락처 조사일시	인지경로 (기관)
		년 월 일 시	(예; 1339, 보건소, 의료기관)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1.3 성별
1.4 국적	1.5 거주지 주소	○ 남 ○ 여
1.6 연락처 (보호자)	1.7 직업 (직장명, 학교명)	

2. 발생지역 여행력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2.1 출국 일시	년 월 일 시		
2.2 최근 14일간 방문 지역 및 기간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3 입국시 경유	○ 예 ○ 아니오		
2.3.1 입국시 경유지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경유지 공항 밖 출입 여부: ○ 출입함(목적:) ○ 출입안함		
2.4 방문 목적	○ 관광 ○ 업무(출장) ○ 해외근무 ○ 해외 거주 ○ 기타 ()		
2.5 동반자	○ 단독(1인) ○ 2인 이상 여행(가족, 업무 등) (동행자: 명)		
2.6 감염위험요인 (발병일로부터 14일 이내)	□ 중국에서 □ 중국외 지역에서 □ 시장 방문 □ 가금류(닭, 오리 등) 및 야생동물 섭취 및 접촉 □ 급성호흡기증상자(발열, 기침, 폐렴 등)와의 접촉 □ 현지의료기관 방문 □ 해당 없음 방문일: 년 월 일, 장소: 접촉일: 년 월 일, 장소: 접촉일: 년 월 일 접촉일: 년 월 일, 방문사유: <tr> <td>2.7 입국 일시</td><td>년 월 일 시 항공편 ()</td></tr>	2.7 입국 일시	년 월 일 시 항공편 ()
2.7 입국 일시	년 월 일 시 항공편 ()		

3. 임상증상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3.1 최초증상	□ 발열(°C) □ 기침 □ 가래 □ 오한 □ 근육통 □ 인후통 □ 호흡곤란 □ 기타()
3.1.1 발현 일시	년 월 일 시
3.1.2 발현 장소	○ 입국 전(장소:) ○ 비행기 내 ○ 입국 후(장소:) ○ 기타()
3.1.3 확인자	○ 본인 ○ 의료인 ○ 보건소 담당자 ○ 검역소 담당자 ○ 기타() 기관명() 확인일시()
3.2 현재 증상	□ 발열(°C) □ 기침 □ 가래 □ 오한 □ 근육통 □ 인후통 □ 호흡곤란 □ 기타()
3.3 해열제 복용여부	○ 예(복용시간: 월 일 시간) ○ 아니오
3.4 기저 질환	○ 예(기저질환:) ○ 아니오
3.5 흡연여부	○ 예 ○ 아니오
3.6 의료기관 진단	□ 폐렴 □ 급성호흡기증후군 □ 기타() □ 흉부방사선촬영: ○ 예(소견:) ○ 아니오

4.1.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 기재	○ 예() ○ 아니오	가족(명) 의료진(명) 직장(명) 그 외(명)
4.2 (의료기관) DUR /수진자조회시스템 상 여행력 확인	○ 예 ○ 아니오	
4.3 입국 후 1339 신고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	○ 예 ○ 아니오	* 시·도와 접촉자 범위 및 명단을 확정 하여 최종명단 작성 및 보류(서식4)
4.4 접촉자		

시도역학조사반 작성란

사례분류	○ 의사환자 ○ 자가격리대상자 ○ 사례 '미해당'
역학적 연관성	○ 중국 방문 ○ 중국 후베이성 방문 ○ 확진환자 접촉
호흡기 증상	○ 폐렴 ○ 발열 ○ 발열+호흡기증상 ○ 호흡기증상
보건소 조치사항(중복기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 자가격리 ○ 능동감시 ○ 보건교육
담당 역학조사관	사례분류 일시 년 월 일 시

서식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접촉자 조사 양식

순번	접촉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상세주소	접촉사유	격리구분	내국인	국적	핸드폰	연락처	작업장명 (학교명)	최종접촉일	의심환자여부
	띄어쓰기 금지	생년월일 년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등록 숫자만 입력 (예시 : 20160905)	1:남 2:여	주소를 기준으로 시·도 시·군·구 코드를 수기로 선택 매칭		01[의료진] 02[의료진 기타] 03[환자] 04[가족] 05[동료] 06[기타]	1[격리안함] 2[격리해제] 3[자가격리] 4[병원격리] 5[코호트 격리]	Y : 내국인 N : 외국인 반드시 국적 입력	내국인 항목 'N' 선택 시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숫자만 입력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Y : 예 N : 아니오
1	홍OO	1971010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1[의료진]	3[자가격리]	Y		0101234 1234	0212341 234	OO병원	20150630	Y
2	홍OO	19710102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4 1234	0212341 234	OO학교	20150630	N
3	MOO	2001010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2[의료진 기타]	3[자가격리]	N	중국	0101234 1234	0212341 234	OO기업	20150630	N
4	홍OO	20010103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4 1234	0212341 234	무직	20150630	N

* 반드시 본 양식대로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 → 접촉자관리 → 등록(엑셀)로 등록

* '보건소 의견'란에 주민등록번호, 접촉한 확진환자 번호, 확진자와의 접촉장소 기재

격리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격리 구분 ☐ 자가 ☐ 시설 ☐ 병원	격리 기간		
	격리 장소	격리 장소	
		주소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 또는 동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격리대상’임을 통지합니다.

※ 본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 년 월 일

OOO 보건소장

(관인생략)

Notice of Isolation/Quarantine

Name		Date of Birth	
------	--	---------------	--

Type of	Duration	effective from _____ to _____
	Place	☐ Residence(including home) ☐ Other facilities
		Addres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otifies you that you should be self-quarantined for requested period of time according to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9.1.14 or 41.3.2

If you do not comply with this notice, you will be fined up to 3 million-won based o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Article 80.2 or 80.7

Year/Month/Date: ____/____/____

Mayor · Governor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or
Mayor · Governor · Head of district office[gu],
Head of medical institution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 해당 서식은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경우에 대한 서식으로,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시, 해당기관의 서식에 맞추어 작성 및 의뢰 필요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3.>

() 검체 시험의뢰서				처리기간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기관	의료기관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환자	성 명 (또는 관리번호)		생년월일		성 별	
	발병일		검체채취일			
검체 종류(수량)						
시험항목						
검체 채취 구분 (1차 또는 2차)						
담당의사소견서 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기관의 장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 첨부자료 1. 검사대상물 2.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						
유의사항						
1. 의뢰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2. 의뢰기관의 전화번호는 결과회신이 가능한 번호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 환자의 성명 대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체 종류(수량)란에는 검체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혈액(2개)]						
처리 절차						
의뢰서 작성 ➔ 접수 ➔ 시험·검사 ➔ 결재 ➔ 성적서 발급 의뢰인 질병관리본부(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이 안내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감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이 안내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하는 분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기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아주세요.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자가격리대상자가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발열(37.5 °C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20.01.24.(금) 기준)

□ 검체 종류

○ 하기도 및 상기도 검체* 2종류 검체 필수 채취

* 단,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혈액) 채취
(가능할 경우 대변, 소변 채취)

※ 출처, CDC, 2019 Novel Coronavirus, Wuhan, China , Guidelines for Clinical Specimens, 2020.1.17. ver.

표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인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1	하기도 ·가래	·(용기) 멸균 50ml 튜브 ·(검체량) 3ml 이상
2	상기도 ·구인두도말물 ·비인두도말물	·(용기) 하나의 VTM 배지에 비인두와 구인두 도말물 동시 채취
3	기타 ·혈액 ·대변 / 소변	·(용기) SST 5~10ml, 영아의 경우 1ml) ·(용기) 멸균용기

(필수 검체) 하기도 및 상기도, (선택 검체) 혈액 등 기타 검체

□ 검체 채취 방법

* 검체 채취 시,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가운, 고글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함

○ 하기도 검체 채취 방법

- 가래(Sputum) :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그림1. 가래 채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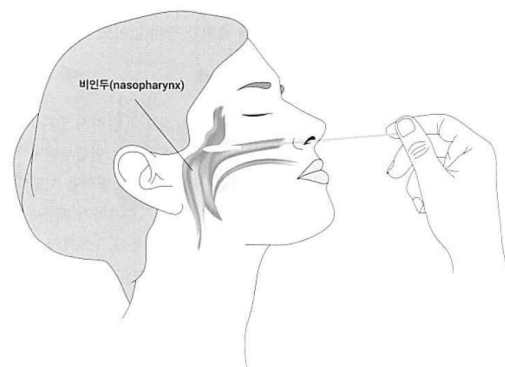
○ 상기도 검체 채취 방법

-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하비갑개 중하부(구인두)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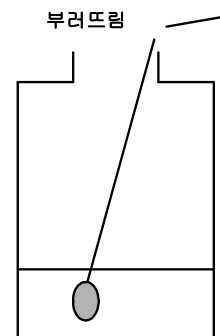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그림2. 상기도 채취 방법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한다.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한다.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한다.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한다.
-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한다.
(4℃ 유지)



□ 검체 포장

○ 검체 포장 방법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표 2. 3중 포장용기 예시

구 분	1차 용기	2차 용기	3차 용기
포장용기			

□ 검체 운송

○ 검체운송 담당

- (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할 경우) 환자 실 거주지 보건소 담당자가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 * 검체 운송 담당자는 N95 등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의심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본부)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 (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 본 지침에서 기술되지 않은 감염관리 등 참고할 사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제6판)'을 참조함
- 본 지침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의 판단 하에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